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49
----------	--------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마포구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14조의3)
 - 재산세 감면을 받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 실효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안 조례 제1156호 부칙 제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10. 4. ~ 10. 24. (제출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2019.11.5.)
- 7)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3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3(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세무1과 전창우 (☎ 3153-8715)